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중 “생활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”을 “아동양육비지원, 생활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”으로 하고,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“청소년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·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”을 신설하며,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4호를 각각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5호로 한다.

시행령 제10조의2제5항 중 “다만,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.”를 삭제하고, 제10조의3을 제10조의5로 하며, 제10조의3과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금융정보,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) ① 법 제18조4제1항제1호에서 “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금융정보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1.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: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

2.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: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
 3.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: 최종 시세가액.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.
 4.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, 양도성예금증서: 액면 가액
 5. 연금저축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, 배당 또는 할인액
- ② 법 제18조4제1항제2호에서 “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신용정보”라 한다)를 말한다.
1.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 2.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- ③ 법 제18조4제1항제3호에서 “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보험정보”라 한다)를 말한다.
1. 보험증권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 2. 연금보험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 3.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
- 제10조의4(금융정보등의 제공 등) ① 법 제18조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

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,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“금융정보등”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2.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,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

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2.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

3.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

4. 금융정보등의 내용

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,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의2(입소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)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
2. 보호자가 수신거부·연락두절·교정시설 또는 치료·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하는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의2(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 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) ① (생 략)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“ <u>생활지 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청소년활 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 용</u> ”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 다. <u><신 설></u> <u>1.~4.(생략)</u>	제10조의2(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 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“ <u>아동양 육비지원, 생활지원, 의료지원, 주 거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용</u> ”-----. <u>1. 청소년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 ·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</u> <u>2.~5.(현행 1.~4.와 같음)</u>
제10조의2(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 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) ③ ~ ④ (생략)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 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성평 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 <u>다</u>	제10조의2(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 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)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 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성평 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만,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
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
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
까지로 한다.

<신 설>

<후단 삭제>

제10조의3(금융정보, 신용정보 및
보험정보) ① 법 제18조4제1항
제1호에서 “예금의 평균잔액과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
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금융정보”
라 한다)를 말한다.

1.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
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: 최
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
2.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
저축성예금: 예금의 잔액 또는 총
납입액
3.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
분, 부동산(연금)신탁: 최종 시
세가액.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
평가에 관하여는 「상속세 및

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1

항을 준용한다.

4.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

인수권증서, 양도성예금증서: 액

면 가액

5. 연금저축: 정기적으로 지급된

금액 또는 최종 잔액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재

산에서 발생하는 이자, 배당 또는

할인액

② 법 제18조4제1항제2호에서 “채

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

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

정보(이하 “신용정보”라 한다)를

말한다.

1.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
2.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
③ 법 제18조4제1항제3호에서 “보

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

<신 설>

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보험정보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1. 보험증권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
2. 연금보험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
3.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

제10조의4(금융정보등의 제공 등)

① 법 제18조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,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“금융정보등”이

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
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
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
록번호

2.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
범위,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

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
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
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다음
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
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
록번호

2.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
관등의 명칭

3.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
번호

4. 금융정보등의 내용

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
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

<u>제10조의3 (생 략)</u> <u>제17조의2(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) 법 제32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가정에서 발생한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.</u>	<u>가입한 협회,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제10조의5 (현행 제10조의3과 같음)</u> <u>제17조의2(입소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)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</u> <u>2. 보호자가 수신거부·연락두절·교정시설 또는 치료·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하는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51
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72